

● 제30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2. 6. 1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3258, 3259, 3260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22. 05. 30.
- 다. 회 부 일 : 2022. 06. 03.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342,800백만원
- 징수결정액 : 367,362백만원
- 실제수납액 : 363,410백만원
- 불납결손액 : 5백만원
- 미 수 납 액 : 3,947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8.9%(전년도 99.2%)임.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342,800	367,362	363,410	5	3,947	98.9
일반회계	342,800	367,362	363,410	5	3,947	98.9
세외수입	65,279	88,753	84,800		143	95.5
경상적세외수입	39,239	53,433	53,289	5	3,804	99.7
임시적세외수입	26,028	35,311	31,503		1	89.2
지방행정제재·부과 금	13	9	8			88.8
지방교부세	1,066	1,086	1,086			100.0
지방교부세	1,066	1,086	1,086			100.0
보조금	267,634	266,870	266,870			100.0
국고보조금등	267,634	266,870	266,870			100.0
지방채	8,200	8,200	8,200			100.0
국내차입금	8,200	8,200	8,2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1	2,454	2,454			100.0
보전수입등	621	2,454	2,454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700,304백만원
- 예산증감 : 10,479백만원
- 예산현액 : 710,783백만원
- 지출액 : 658,720백만원
- 이월액 : 39,883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1,116백만원
- 불용액 : 11,064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6%(전년도 2.2%)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1,064	1,016	-	1,413	569	8,067	-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년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율 (%)
총 예 산	710,783	658,720	39,883	1,116	11,064	1.6
사 업 예 산 계	700,927	650,623	39,883	1,053	9,369	1.3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253,097	245,331	3,089	572	4,105	1.6
생활보건 관리 향상	164,106	163,228	177	111	590	0.4
코로나19 대응 수준 향상	63,246	28,309	34,650	-	286	0.5
시민건강수준 향상	217,770	181,298	35,102	-	1,370	0.6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12,948	12,840	-	30	78	0.6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5,509	5,326	50	12	121	2.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준 향상	1,408	1,024	234	45	105	7.5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17,897	17,142	122	66	566	3.2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8,761	8,243	-	9	509	5.8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은평병원)	5,503	4,746	80	24	654	0.4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서북병원)	13,928	11,444	1,028	185	1,271	0.4
일 반 예 산 계	9,856	8,098	-	63	1,695	17.2
기 본 경 비	7,558	6,533	-	-	1,025	13.6
인 력 운 영 비	656	591	-	63	2	0.3
재 무 활 동	1,642	974	-	-	668	40.7

- 가. 예산 이용 : 없음
- 나. 예산 전용 : 42건 3,196백만원
- 다. 예산 이체 : 10건 23,281백만원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39건 7,251백만원
- 마. 예비비 사용 : 4건 1,221백만원
- 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23건 39,883백만원
 - 명시이월 : 10건 35,432백만원
 - 사고이월 : 13건 4,450백만원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수령액 : 266,870백만원
 - 집행액 : 230,889백만원
 - 이월액 : 34,837백만원
 - 집행잔액 : 1,143백만원

3. 기금결산

- 기금조성현황

〈 2021년도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1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식품진흥기금	64,783	△2,254	2,850	4,834	62,529

- 기금결산현황

〈 2021년도 기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12,363	계	12,363
용 자 금 회 수	823	비용자성사업비	3,746
예 탁 금 회 수	5,500	용 자 성 사 업 비	1,085
예 치 금 회 수	4,283	기 본 경 비	3
이 자 수 입	925	기 타 지 출	-
기 타 수 입	832	예 치 금	7,529
		예 탁 금	-

4. 채권현재액 : 5,5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1년말 현재액 ②	전년대비 증감 ③=②-①
금 액	2,030	3,474	1,444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말 시민건강국 관리 공유재산

- 토지 344,426 m^2 1,279,250백만원,
- 건물 424,024 m^2 506,933백만원,
- 기타 69건 8,196백만원,

총 1,794,379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21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248,863	545,516	-	1,794,379
행정 재산	계	1,248,863	368,199	-	1,617,062
	공용재산	1,082,305	365,970	-	1,448,275
	공공용재산	166,557	2,230	-	168,787
일반재산*		-	177,317	-	177,317

*일반재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시 소유부지(서초구 원지동)에서 미군 공병단부지(중구 방산동)로 변경함에 따라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 시민건강국으로 일반재산(1769억 6446만원)이 편입되어 증가한 것임.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말 시민건강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931개, 현재액 14,043백만원임.

〈 2021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기타	소계	
합계	수량	803	86	49	95	230	23	69	10	102	931
	금액	14,505	546	225	1,643	2,414	1,316	1,534	25	2,876	14,043
일반회계	수량	803	86	49	95	230	23	69	10	102	931
	금액	14,505	546	225	1,643	2,414	1,316	1,534	25	2,876	14,043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428억원으로, 징수결정액(3673억 6200만원) 중 39억 4700만원이 미수납되고, 500만원이 불납결손액 되어 3634억 1000만원이 실제 수납됨.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8.9%로, 이는 직전회계연도의 수납률 보다 0.3% 감소함.

〈표-1〉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21년도	342,800	367,362	363,410	5	3,947	98.9
2020년도	243,338	246,710	244,799	5	1,907	99.2
2019년도	190,340	200,136	198,564	51	1,521	99.2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예산현액은 3428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 예산현액 2433억 3800만원 보다 994억 6200만원이 증가됨.
 - 예산현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① 보조금(953억 9600만원 증가), ② 지방채(82억원 증가)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① 보조금의 경우,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방문접종 인건비, 희석제)에 433억 1268만원, 안전한 진료환경 조

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¹⁾에 69억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²⁾에 39억 6152만원 등³⁾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종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것이며,

- ② 지방채는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에 82억원이 발행⁴⁾되어 세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표-2〉 2021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주요 세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0		2019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342,800	100.0	243,338	100.0	190,340	100.0
세외수입	65,279	19.0	65,903	27.1	61,626	32.4
지방 교부세	1,066	0.3	4,240	1.7		
보조금	267,634	78.1	172,238	70.8	127,928	67.2
지방채	8,200	2.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21	0.2	957	0.4	786	0.4

- 1) 자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1522(2020.09.25.),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운영함.
- 2)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658(2021.03.0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추경) 수요 제출 요청.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은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증진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을 한시 지원하는 사업임.
- 3) 자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021), 2021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 4) 자료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95(2021.12.10.), 지방채 발행결과 알림(2021-10호, 2021-11호).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1) 세입 중 미수납액 관련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39억 4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 19억 700만원 보다 20억 4천만원이 증가함(표-1 참고).
 - 미수납액의 경우, 주로 ①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30억 7335만원 발생), ② ‘지난연도수입’(6억 3116만원 발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우선, ①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축소 및 미추진된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② ‘지난연도수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 체납’(3억 4416만원)⁵⁾, ‘서북병원 장례식장 무단점유 건 명도소송 소송비용 체납 및 구내매점 임대료 체납’(9499만원)⁶⁾ 등으로 확인됨.
 - 체납액의 경우, 징수 시기와 징수 가능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사건 2020가합505846 손해배상(기)).

6) 자료 :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사건 2016카합5472 소송비용액확정).

자료 :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사건 2013카합415 소송비용액확정).

자료 :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사건 2013카합1100 소송비용액확정).

자료 :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사건 2013타기855 집행비용확정).

〈표-3〉 2021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미수납액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 상세사유
기타이자 수입	438,412	650,117	566,814	83,303	(보건의료정책과 등)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보조사업 축소 및 미추진에 따른 보조금 이자반납액 증가
시·도비 보조금반 환수입	20,153,61	27,532,332	24,458,982	3,073,350	(보건의료정책과 등)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에 따른 자치구 보조사업 축소 및 미추진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금액 증가
그외수입	3,327,182	1,498,939	1,497,236	1,703	(보건의료정책과 등) 세입예산 편성 시, 민간보조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급 등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신설된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세입과목 분리 징수
지난연도 수입	2,495	1,877	1,246	631,161	(보건의료정책과 등) 당초 예상 대비 전년도 시비보조금 미수납액 규모 감소
기타과태 료	8,470	3,726	3,220	507	(건강증진과) 서울광장 등 3개 광장, 버스전용차로 금연단속업무 자치구 이관에 따라 과태료 부과업무 중단

2)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관련

- 「지방재정법」 제34조7)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세입예산액을 보면, 세입예산액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예산이 3건 42억 7015만원 발생함.
 - ① 주차요금수입(4884만원)과 ② 자체보조금반환수입(42억 1710만원)의 경우, 2021년에 세입과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세입과목과 실제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한 것임(표-4 참고).
 - 그러나 2021년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20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⁸⁾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집행부는 세입예산 편성과과정에서 세입과목 신설 여부 등을 점검하여 모든 세입이 예산에 편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7)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8) 자료 : 행정안전부-(2020.07.),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107-10), p29-p34.

- 현행: (08) 기타사용료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 개정: (08) 주차요금 수입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 현행: (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지원금 → 개정: (02) 자체

보조금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표-4〉 2021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주차요금 수입	-	48,838	48,838	48,838	(보건환경연구원, 서북병원) 원내 주차장 요금징수 관련 '기타사용료'로 세입예산 편 성하였으나, 2021년 신설된 '주차요금수 입' 세입과목으로 분리 징수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	4,319,459	4,217,100	4,217,100	(보건의료정책과 등) 민간보조사업 시비보 조금 반환금 등을 '그외수입'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나, 2021년 신설된 '자체보조 금반환수입' 세입과목 분리 징수
변상금	-	4,210	4,210	4,210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사유재산 무단 점 유사용(주차장)에 따른 변상금 부과

3) 세입 추계의 정확성 관련

가) 세입 과다편성 : 보건환경연구원 증지수입

-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외수입 가운데 증지수입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당초 수입증지 항목으로 4억 5421만원의 예
산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3억 5748만원으로 당초 예
산보다 9680만원이 부족하게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5〉 2021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외수입(증지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2021년 예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차액 비율
454,212	357,408	357,480	△96,804	-21.3%

-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외수입은 식·의약품 및 질병연구, 수질분야 검사
의뢰 시 발생하는 증지수입을 의미하며, 주요 시험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6〉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민원 분야 및 품명

분야명	품명
수질관련검사 (폐기물 포함)	먹는물, 사업장 폐하수, 폐기물 등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검사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류, 위생용품 축산물 및 의약품, 화장품 등
잔류 농약	콩나물 등 농산물
한약재 검사	한약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건축자재 검사	접착제, 페인트, 살란트 등

*출처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31355>)

-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시 민원인은 시료(검체)를 지참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수납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이 발생하게 됨.
-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증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며 전체 세입예산 25억 9544만원 가운데 4억 3728만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세입예산의 1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7〉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 세입 예산현액 및 징수액

(단위: 천원)

관	항	목	세부내역	2021년		
				예산현액	징수액	징수율 (%)
합 계				2,595,435	2,561,786	98.7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장수입	43,865	40,872	93.2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검사수수료	437,281	335,968	76.8
	이지수입	기타이지수입	기타이지수입	2,330	2,167	93.0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그외수입	30,527	21,793	71.4

관	항	목	세부내역	2021년		
				예산현액	징수액	징수율 (%)
	기타수입	위약금	자연배상금 등	5,655	856	15.1
	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대금	불용품매각대금	46,759	82,800	177.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0	20,000	0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기금	기금	712,444	712,444	100.0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330	51,330	100.0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1,208,427	1,208,427	100.0
보전수입 등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6,817	85,129	149.8

-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민원검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세입항목에서 과부족이 나타난 것도 이와 관련한 현상으로 사료됨.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2년도 해당 세입항목을 전년 대비 약 10% 삭감시킨 4억 127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8〉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3개년 민원접수 및 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계	9,615	458,958	7,568	370,803	6,452	334,484

〈표-9〉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현황

(단위: 천원)

관	항	목	세부내역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비율 (%)
				예산현액	예산현액	
합 계				2,595,435	2,714,932	105%
경상 적외 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장수입	43,865	36,194	83%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검사수수료	437,281	401,269	92%
	이지수입	기타이지수입	기타이지수입	2,330	1,695	73%
임시 적외 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그외수입	30,527	25,197	83%
	기타수입	위약금	자연배상금 등	5,655	4,334	77%
	재산매각수 입	불용품매각대금	불용품매각대금	46,759	90,315	193%
지방 교부 세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0	0	-
국고 보조 금 등	국고보조금 등	기금	기금	712,444	649,404	91%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보조금	51,330	30,824	60%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1,208,427	1,403,367	116%
보정 수입 등	전년도이월 금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국고보금반환금	56,817	72,333	127%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
해 24시간 신속진단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등
외부환경이 세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의 유행과 장기화는 예측하기 힘든 사회재난 현상이나, 해당
항목이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시험검사 민원과정의 비대면 조치 등 수입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 수반되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임.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으
나, 해당 항목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정확
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003억 400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액된 예산현액은 7107억 8300만원임.
-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6587억 20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398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고, 11억 1600만원이 보조금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110억 6400만원으로 나타남.
- 불용률은 1.6%로, 이는 직전회계연도의 불용률 보다 0.6% 감소함.

〈표-10〉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 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1년도	700,304	710,783	658,720	39,883	1,116	11,064	1.6
2020년도	601,065	631,146	606,565	9,258	1,154	14,169	2.2
2019년도	485,681	494,964	465,113	14,070	758	15,023	3.0

나. 세출결산 검토의견

1)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9)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 내용을 매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¹⁰⁾, 이용·이체¹¹⁾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11〉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2021 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예산변경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전용 42건(31억 9600만원), 예산변경 39건(72억 5100만원), 예산이체 10건(232억 8100만원), 예비비 사용 4건(12억 2100만원)으로 나타남.

9)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0)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11)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표-12〉 2021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건수	-	42	39	10	4
승인금액	-	3,196	7,251	23,281	1,221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¹²⁾에 따라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42건, 전용금액은 31억 9600만원으로 나타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용 건수는 12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직전 회계연도(32억 6000만원) 보다 6400만원 감소함.

〈표-13〉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993,640	50,000	2021-03-11	48,757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90,000	50,000		10,250

- 12)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403-01 자치단체자 본보조	21,560	21,560	2021-05 -31	-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1,560		-
3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기 관 평가 및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24,642	11,741	2021-07 -20	11,790
		공공보건의료기 관 평가 및 역량강화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44,238	11,741		2,458
4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21,103,402	670,000	2021-07 -20	526,161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402-03 민간위탁사 업비		670,000		-
5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21,308,402	205,000	2021-07 -20	526,161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201-01 사무관리비	10,000	205,000		39,238
6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3,943,640	500,000	2021-07 -22	48,757
		공공보건의료기 관 평가 및 역량강화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500,000		-
7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3,443,640	40,000	2021-07 -22	48,757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907,645	40,000		-
8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3,403,640	20,000	2021-07 -22	48,757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822,669	20,000		-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9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3,383,640	20,000	2021-07 -22	48,757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393,839			20,000
10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3,363,640	20,000	2021-07 -22	48,757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231,175			20,000
11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19,650,985	70,000	2021-08 -24	526,16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947,645			70,000
12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 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2,624,987	30,000	2021-08 -24	82,40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1,017,645			30,000
13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 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2,594,987	80,000	2021-08 -24	82,40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842,669			80,000
14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 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2,514,987	20,000	2021-08 -24	82,400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413,839			20,000
15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 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2,494,987	20,000	2021-08 -24	82,40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251,175			2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6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3,343,640	35,500	2021-10 -15	48,757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433,839			35,500
17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3,308,140	28,500	2021-10 -15	48,757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271,175			28,500
18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301-12 기타보상금	4,000,000	200,000	2021-11 -04	240,000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00,000			200,000
19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1,178,676	18,000	2021-11 -26	109,545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469,339			18,000
20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1,160,676	18,000	2021-11 -26	109,545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922,669			18,000
21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1,142,676	25,500	2021-12 -01	109,545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299,675			25,500
22	보건의료 정책과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000	9,000	2021-12 -08	-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764,774			9,000
23	보건의료 정책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자체)	201-01 사무관리비	30,000	27,000	2021-12 -08	76,54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773,774			27,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4	보건의료 정책과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자체)	201-01 사무관리비	41,500	20,000	2021-12-08	33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800,774	20,000		-
25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3,279,640	198,000	2021-12-08	48,757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566,774	198,000		-
26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1 사회복지사 업보조	430,072	67,000	2021-12-08	16,184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499,774	67,000		-
27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 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2,474,987	23,280	2021-12-09	82,400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24,828	23,280		660
28	감염병관 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06-01 재료비	3,340,000	38,300	2021-04-14	11,913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38,300		800
29	감염병관 리과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75,434	75,434	2021-05-20	-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402-03 민간위탁사 업비	150,000	75,434		3,204
30	감염병관 리과	역학조사 체계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75,000	15,000	2021-10-28	20,000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30,000	15,000		4,374
31	감염병관 리과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201-01 사무관리비	55,980	30,000	2021-10-28	917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30,000		4,374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2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06-01 재료비	3,217,400	52,500	2021-11-09	11,913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301-12 기타보상금		52,500		-
33	건강증진과	찾·동 방문건강관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024,729	196,465	2021-11-26	31,832
		난임부부 지원(국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40,615	196,465		-
34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 의료자원 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25,600	115,760	2021-06-16	1,041
		감염병 정책연구·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5,240	115,760		1,173
35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 정책 거버넌스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30,240	30,240	2021-06-16	-
		감염병 정책연구·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7,000	30,240		1,173
36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 정책 거버넌스 구축	202-03 국외업무여비	18,000	18,000	2021-06-16	-
		감염병 정책연구·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7,240	18,000		1,173
37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680,865	37,000	2021-12-02	52,287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614,367	37,000		18,690
38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718,511	22,456	2021-12-10	270,354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401-01 시설비	80,000	22,456		1,584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9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 비	968,400	23,100	2021-11 -11	18,853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297,816	23,100		8,196
40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 비	945,300	57,300	2021-11 -11	18,853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32,411	57,300		289
41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 비	596,480	18,480	2021-12 -06	18,853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320,916	18,480		8,196
42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 비	487,298	17,500	2021-12 -15	18,853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339,396	17,500		8,196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전용 주요사례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사업명: 온서울 건강온)은 만 19~64세 서울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임¹³⁾.
-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21년 11월~22년 8월)의 홍보 캠페인, 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세부사업내 기타보상금에서 2억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나, 전용된 예산에서 749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동 시범사업은 21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사업의 인지도 향상,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한 홍보 캠페인,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전용을 실시(전용 승인일자: 21년 11월 4일)한 것임.
 - 전용된 예산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한 결과, 목표 인원 5만 명 모집을 조기에 마감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시민이 선정한 ‘2021년 서울시 10대 정책’ 중 2위 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함¹⁴⁾.
 - 다만, 전용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할 수 없어 전용받은 재원은 결국 불용처리 이외에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부에서는 향후, 시범사업의 홍보 캠페인이나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전용 계획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13) ① 서울온 밴드를 활용한 일상 속 자기주도 건강관리 ②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참여도에 따른 보상 제공

14) 자료: 김준수, 2021.12.20.,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신청자 5만명 모집 목표 달성”, 데일리스포츠한국,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84>

(2)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사업은 환자진료(결핵, 치매, 노인병 환자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조제물품 등을 구입하여 처치·투약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¹⁵⁾.
- 서북병원은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총 4번에 걸쳐 세부사업내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의료및구료비에서 총 1억 1638만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908만원, 공공운영비로 573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188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우선, 11월 예산 전용사유는 ① 장비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장애 해결,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 및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의료및구료비에서 8040만원을 감액한 것인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급식실 취반기 등 주방장비 구매, 세척실 냉방기 구매설치, 급식실 조도개선, 세척실 바닥개선 공사, 본관 캐노피 유리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임¹⁶⁾.

15) 자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2021), 2022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보건복지위원회).

16) 자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2021, 11), 필수장비 구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

- 물론, 「지방재정법」제49조17)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당초 계획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보여지는 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의료 외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 노후화 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본예산 편성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고함.
- 다만, 12월 예산 전용은 ② 코로나19 노인요양(와상) 병상 급증으로 인해 확진자 치료에 필요한 양압지속유지기 구매, ③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지정(지정 통보: 21년 12월 7일)에 따라 수액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의료및구료비에서 3598만원을 감액한 것인데,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용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서북병원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에서도 12월 한 달 사이에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의료및구료비에서 2번의 전용을 실시하여 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불용액이 5억 9100만원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

17)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¹⁸⁾에서는 전용의 시기, 전용의 적절성, 불용액 발생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북병원은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의료및구료비를 예산집행 마감시점인 연말에 맞추어 전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의료및구료비의 과다 편성을 통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3)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 해당 사업은 당초 코로나19, MERS, 신종플루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 해당 사업 편성시 집행부에서는 사무관리비로만 약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용을 통해 인건비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남.
 - 사무관리비는 위기관리 대응훈련비,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간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운영, 신종감염병 등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편성되어 있음.

18) 자료: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2021.06.21.) 회의록

- 이정인 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16억가량 편성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환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6억 정도가 불용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전용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고 계속 남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추 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전용한 것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용한 것이 12월 8일, 12월 22일 돈이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전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되지 않도록, 다 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이게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돈을 끝까지 남겨놓고 전용하는데 그 전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 시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사업도 적절한 것이냐는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집행부는 동일 사업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3000만원, ‘역학조사 체계 강화’ 사업에서 1500만원의 전용을 실시해 총 45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음.

〈표-14〉 인건비 전용 현황

당초 편성사업	편성목	금액 (천원)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사무관리비	30,000
역학조사체계강화	사무관리비	15,000

- 예산은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5개 편성목¹⁹⁾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전용제한 목에 포함 되어 있음.
 - 해당 전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신설해 전용한 것으로,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수립되지 않았던 편성목을 신설해 전용을 실시한 것이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²⁰⁾에서 명시하는 전용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역학조사 체계 강화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및 기타 재출현 감염병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역학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역학조사

19) 전용제한 목 : 인건비(기준인건비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20) 제49조(예산의 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편성된 사업임.

- 해당 전용을 통해 확보된 인력은 총 12명으로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 엑셀 데이터 입력 및 정리 등 코로나19 관련 행정 업무지원이 주된 업무임.
- 또한 해당 전용을 통해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는 당초 21년말까지 2개월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22년 3월까지 채용이 연장²¹⁾된 것으로 나타남. 기간제근로자가 지속적·장기간에 걸쳐 필요했다면 정확한 검토와 추계를 거쳐 추경편성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사료됨.

21) 22년도 해당 예산은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에 3개월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편성하였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예측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시민건강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긴급한 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전용을 통한 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예산의 계획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나)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39건, 변경금액은 72억 5100만원으로 나타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변경 건수는 20건 증가하였으나 변경액은 직전 회계연도(10억 4100만원) 보다 62억 1000만원 감소함.

〈표-15〉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5,428,000	3,248,000		2021-02-25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3,248,000		-
2	보건의료 정책과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자체)	80,000	16,500		2021-04-12	33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16,500		1,1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 획 수립	201-01 사무관리비	10,000	2,940	2021-05 -31	1,401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940	2,940		-
4	보건의료 정책과	안전망병원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64,000	40,000	2021-07 -15	-
		안전망병원 운영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69,000	40,000		-
5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20,433,402	782,417	2021-07 -20	526,161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05 민간위탁금		782,417		100,896
6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402-01 민간자본사 업보조(자 체재원)	1,000,000	10,000	2021-07 -20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402-03 민간위탁사 업비	670,000	10,000		-
7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402-01 민간자본사 업보조(자 체재원)	990,000	990,000	2021-07 -20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406-01 기타자본이 전		990,000		590,000
8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 터 건립	401-02 감리비	600,000	135,926	2021-08 -11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 터 건립	401-01 시설비	10,414,362	135,926		777,465
9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 터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250,000	70,000	2021-08 -11	12,138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 터 건립	401-01 시설비	10,550,288	70,000		777,465
10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308-01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11,278,548	99,872	2021-08 -24	109,545
		정신건강증진시 설 인력확충	308-01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1,126,018	99,872		-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1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기 관 평가 및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12,901	28,467	2021-09 -23	11,790
		공공보건의료기 관 평가 및 역량강화	204-03 특정업무경 비	78,000	28,467		780
12	보건의료 정책과	기본경비	202-01국 내여비	181,300	36,000	2021-11 -12	19,634
		기본경비	201-01사 무관리비	104,099	36,000		9
13	보건의료 정책과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자체)	201-01 사무관리비	63,500	22,000	2021-11 -25	33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2,828	22,000		660
14	감염병관 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06-01재 료비	3,373,200	33,200	2021-02 -10	11,913
		서울형 코로나19 환자관리시스템 등 운영	207-02전 산개발비		33,200		3,500
15	감염병관 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06-01재 료비	3,375,000	1,800	2021-02 -10	11,913
		서울형 코로나19 환자관리시스템 등 운영	201-01사 무관리비		1,800		-
16	감염병관 리과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307-02민 간경상사업 보조	330,070	254,636	2021-05 -20	-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307-05민 간위탁금		254,636		58,278
17	감염병관 리과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402-01민 간자본사업 보조(자체 채원)	150,000	150,000	2021-05 -20	-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402-03민 간위탁사업 비		150,000		3,204
18	감염병관 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06-01재 료비	3,301,700	76,800	2021-07 -16	11,913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201-01사 무관리비	382,720	76,800		12,95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9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06-01재료비	3,224,900	7,500	2021-11-09	11,913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01-01사무관리비	152,000	7,500		-
20	감염병관리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	4,968	2021-12-22	194,518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301-12기타보상금		4,968		2,484
21	감염병관리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95,032	2,808	2021-12-22	194,518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303-01포상금		2,808		1,404
22	건강증진과	찾·동 방문건강관리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043,369	18,640	2021-07-13	31,832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000	18,640		-
23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4,500	91,000	2021-08-05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0,000	91,000		-
24	건강증진과	난청 조기진단 지원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000	7,118	2021-09-28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9,304	7,118		-
25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773,500	18,304	2021-09-28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1,000	18,304		-
26	건강증진과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00,000	303,500	2021-11-26	-
		난임부부 지원(국비)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37,080	303,500		-
27	동물보호과	유기동물보호 지원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4,590	2,100	2021-04-09	2,396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6,900	2,100		-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8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 부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201-01사 무관리비	42,100	2,648	2021-10 -26	4,523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204-03특 정업무경비	169,800	2,648		57
29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 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국비)	202-01국 내여비	2,200	2,097	2021-11 -09	870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국비)	206-01재 료비	80,800	2,097		429
30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 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국비)	202-03국 외업무여비	8,000	8,000	2021-11 -09	0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국비)	206-01재 료비	72,800	8,000		429
31	어린이병 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307-01의 료및구료비	1,037,845	150,000	2021-11 -26	28,888
		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307-01의 료및구료비	757,828	150,000		7,250
32	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202-01국 내여비	40,000	363	2021-11 -30	19,634
		기본경비	204-01직 책업무수 행경비	23,700	363		282
33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307-01의 료및구료비	788,511	70,000	2021-12 -10	270,354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307-01의 료및구료비	1,814,131	70,000		70
34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01-01시 설비	1,078,000	94,500	2021-09 -14	38,200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01-02감 리비		94,500		8,860
35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1사 무관리비	844,862	61,000	2021-10 -28	118,775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2공 공운영비	1,271,411	61,000		289
36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201-01사 무관리비	109,980	25,200	2021-11 -26	33,820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204-03특 정업무경비	317,400	25,200		4,118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7	서북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202-01국 내여비	70,000	400	2021-11 -26	19,634
		기본경비	204-01직 책급업무수 행경비	27,900	400		282
38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의 료및구료비	888,000,000	291,520	2021-12 -03	18,853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307-01의 료및구료비	968,042,000	291,520		107,328
39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의 료및구료비	578,000,000	90,702	2021-12 -13	18,853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303-01포 상급	1,488,362,0 00	90,702		6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변경 주요사례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은 21년도에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속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물품 비축 등 상시 방역관리체계를 운영하고자 편성되었음.
- 본 사업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및 선제검사 운영에 따른 진단검사 및 접촉자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방역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20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114억 3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 21년도 해당사업 방침서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 비축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레벨D세트 등 보호복,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기타 소모품으로 산출내역을 책정한 바 있음.
-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9080만원의 전용, 1억 1180만원의 변경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6〉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불용액
소계 (재부사업별)	3,537,000	0	-111,800	3,425,200	3,409,362	3,323,110	86,252	15,838
사무관 리비	152,000	0	7,500	159,500	159,500	159,500	0	0
공공운 영비	10,000	0	0	10,000	6,875	6,875	0	3,125
재료비	3,375,000	-90,800	-119,300	3,164,900	3,152,987	3,066,735	86,252	11,913
기타보 상금	0	52,500	0	52,500	52,500	52,500	0	0
자산및 물품취 득비	0	38,300	0	38,300	37,500	37,500	0	800

-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써,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 제도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내에서 총 6번의 전용과 변경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해당 사업은 21년 1월²²⁾부터 변경사용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사업의 재료비 3500만원을 변경 편성해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현황 자료 플랫폼 구축 및 환자 관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년 9월 제4회 추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었음.
 - 해당 사업은 20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2) 승인은 2021년 2월 10일

를 사유로 사고이월되어 21년에 집행하게 되었음. 또한, 해당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²³⁾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추경 편성시 감리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산 변경을 실시해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1년 11월 해당 사업의 재료를 각각 사무관리비로의 변경, 기타보상금으로의 전용을 실시해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보이닥 앱을 통한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년 12월, 서울성모병원, (주)퍼즐에이아이 3자간 코로나19 환자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병상배정 전까지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 관리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서울시 환자관리 공동대응 MOU 내용〉

- 내 용 : 서울시 자가격리 환자들의 건강상담·관리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서울시 : 자가격리 환자들이 퍼즐에이아이가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쉽게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앱설치 안내)
 - 성모병원 : 성모병원은 서울시가 관리 중인 자가격리 COVID-19 환자의 건강상담·관리 제공을 위한 의료진 관리·운영 (비대면 상담)
 - 퍼즐에이아이 : 화상 상담 플랫폼 “보이닥”을 제공하여 비대면 건강

23)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상담·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도용방지, 상담내용의 안전한 저장 및 보관 (상담시스템 제공)

- 해당 사업은 21년 10월까지 비예산으로 진행되었으나, 21년 10월 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²⁴⁾ 병상대기자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전용을 통해 보이닥 앱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함.
- 당초 집행부의 계획은 전용을 통해 기존 보이닥 앱을 활용하되,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연내 시범사업으로 추진후 지속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요〉

□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요

- 추진기간 : 재택치료와 연계 지속적 서비스 확대 (’21.11.~12월)
- 운영시간 : 평일 및 주말·공휴일 08시~24시
※ 야간 응급상담은 서울시 재택치료지원센터(서울대학교병원 운영)에서 24시간 응급콜 운영
- 운영인력 : 성모병원 의료진 3명, 상담연계 코디네이터 2명
- 제공내용 : 병상대기자, 재택치료자 대상 **보이닥 앱**을 통한 비대면 의료상담
- 약 처방 필요시 병상배정 또는 재택치료 확정후 협력병원 및 보건소를 통해 진행

- 이를 위해 총 6000만원의 전용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진료비와 플랫폼 사용료로 편성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24) 한경 IT. “ ‘위드코로나’ 이제 시작인데...확진자 하루새 1000명 급증” (21.11.03).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10344831> (22.5.31. 검색)

- 한편, 21년 10월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²⁵⁾ ‘21년 11월 모든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발표²⁶⁾한 바 있음.
 - 이 과정에서 중수본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및 병상대기자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및 분류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을 활용하도록 안내²⁷⁾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중수본 지침에 따라 보이닥 앱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유행추이와 장기화는 쉽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규모의 전용을 통해서 긴급한 사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의 경우 빈번한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전산시스템 감리비의 경우 예산편성 시점에서 반영되었어야 했으나 해당 시점에서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를 타 예산의 전용을 통해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지적할 수 있음.
 - 또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도 당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전용편성 후 중수본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시범사업으로 끝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소요예산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음.

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0.8.).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1.30.)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27) 중수본-37844(21.11.26),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및 분류절차 변경 안내”

다) 예산의 이체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28)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10건, 이체금액은 232억 8100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4제6항(29) 신설에 따라(코로나19 대응지원과 신설) 예산을 이체하게 된 것임,
 - 참고로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이체 건수는 8건 증가하였고, 이체액은 직전 회계연도(45억 3800만원) 보다 187억 4300만원 증가함.

〈표-17〉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이체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6,500	36,500		2021-0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8)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1. 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에 관한 사항
2. 코로나19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3.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코로나19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	보건의료정 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59,100	459,100	2021-0 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59,100	
3	보건의료정 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자산및물품취 득비	3,149,400	3,149,400	2021-0 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자산및물품취 득비		3,149,400	
4	보건의료정 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사무관리비	1,239,000	1,239,000	2021-0 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사무관리비		1,239,000	
5	보건의료정 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사무관리비	30,000	30,000	2021-0 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사무관리비		30,000	
6	보건의료정 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기타보상금	385,000	385,000	2021-0 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기타보상금		385,000	
7	보건의료정 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의료및구료비	4,166,800	4,166,800	2021-0 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의료및구료비		4,166,800	
8	보건의료정 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의료및구료비	857,798	857,798	2021-0 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의료및구료비		857,798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9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12,677,493	12,677,493	2021-0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12,677,493	
10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80,000	280,000	2021-07-23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80,000	

2) 예비비 사용 관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³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2021 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총 4건, 12억 2125만원의 지출을 결정하고 12억 197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8만원이 발생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예비비 사용 건수는 10건 감소하였고, 예비비 예산액은 직전 회계연도(160억 1100만원) 보다 147억 8975만원 감소함.

30)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18〉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순번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처리일자		예비비사유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1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365,250	365,250		12-14	12-16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2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250,000	250,000		12-14	12-22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3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466,000	464,521	1,479	02-08	09-16	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4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140,000	140,000		02-08	02-10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3)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관련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사고이월은 13건 44억 5000만원, 명시이월은 10건 354억 3200만원으로 나타남.
- 사고이월은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의결 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사고이월은 예산편성시점부터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쳤으나, 예산집행 중 계획된 예산이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점부터 충분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없었기 때문임.³¹⁾

31) 민기 외(2017).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특히 사고이월이 한 번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연속적인 사고이월의 발생을 초래하기도 함.

〈표-19〉 이월 제도의 구분

구 분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 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이월금액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의 경우 예외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표-20〉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민간자본사 업보조(자체 재원)	200,000			200,000	장기기증 추모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 협의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이월 필요	명시이월
2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23,677,493	12,676,014	12,676,014	11,000,000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필요	명시이월
3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민간경상사 업보조	5,400,000	824,298	824,298	4,575,702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필요	명시이월
4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100,000	385,803	385,803	1,714,197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필요	명시이월
5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7,640,000	280,000	280,000	17,360,000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필요	명시이월
6	장애친화 산부인과 자본보조(국비)	민간자본사 업보조(이전 재원)	175,000			175,000	추경편성 이후 선정되어 국비 교부된 건으로 2022년 전액 명시이월	명시이월
7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	민간경상사 업보조	12,500			12,500	추경이후 선정되어 국비 교부된 건으로 매칭 시비 편성어려워 전액 명시 이월	명시이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8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전산개발비	561,694	529,930	264,965	264,965	21년 상반기 사전절차 및 기관협의 진행으로 '21년 하반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되어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명시이월
9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연구용역비	100,000	39,000	39,000	50,000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의 분할 추진으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21.10. 완료됨에 따라,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학술용역심의 및 공고 등 절차 진행시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명시이월
10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시설비	102,456	20,872	20,872	80,000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운영 중 공간계획(실 배치 등)에 대한 논의 지연으로 연내 설계공모 절차 이행 어려울 것으로 예측	명시이월
11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비	1,400,000	1,285,684	100,000	1,300,000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교통영향 기초조사비 등 부대경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 필요	사고이월

연 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2	안심건강검진 우수병원 확대 지원	사무관리비	50,000	48,000	23,040	24,960	공공의료강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 체계 구축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2022.06.30.) 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13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기타보상금	3,800,000	3,560,000	2,037,394	1,522,606	서울형스마트 헬스케어 건강관리도구 구매 단가계약 체결(2021.10.29.) 이후 사업자 모집완료하였으나, 사업참여자 승인·배송·연동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납품기한 연장됨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14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48,108	47,448	26,108	21,340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 연장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2022.06.30.) 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5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 터 운영	연구용역비	50,000	50,000	30,000	20,000	정신질환자 동료상담가 일자리활성화 및 안정화방안 학술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2022.01.11.) 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16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565,030	552,080	461,480	90,600	의료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감염관리 컨설팅사업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2022.04.30.) 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17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3,164,900	3,152,987	3,066,735	86,252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긴급 구매(32차, 전자체온계) 계약의 납품기한 미도래(~2022.01.19.) 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18	감염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	453,771	420,961	187,000	233,961	감염병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사업 사고이월액	사고이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9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연구용역비	316,000	310,000	275,800	34,200	지역별 오염진단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특성 조사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2022.04.21.) 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20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전산개발비	372,972	354,270	266,136	88,134	하이브리드 모델링 시스템 구축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2022.07.31.) 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21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시설비	983,500	934,504	120,980	824,320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미설치 구간에 대한 공사(1차분)의 준공기한 미도래(~2022.02.28.) 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22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감리비	94,500	85,640		85,640	서북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으로 2022.08.31. 전체 준공예정으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연 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23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자산및물품 취득비	356,896	348,700	230,418	118,283	생화학 자동분석기 및 중앙집중 환자감시장치 등 구매 계약의 납품기한 미도래(~2022.02.15.) 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사고이월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주요사례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 시민건강국에서는 감염병관리과의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이 20년도 사고이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21년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21〉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발생연도	통계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2020	사무관리비	475,400	424,513	319,003	105,510
2021	사무관리비	565,030	552,080	461,480	90,600

-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년도 예산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인해 상반기에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면서 10월에 준공을 착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 이는 21년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20년도 시작한 사업이 21년 6월 준공되면서, 21년도 사업은 용역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특성상 같은 해 8월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용역기간이 22년 4월까지로 결정되면서 계약대금 지급을 위해 사고이월이 연속으로 발생하게 됨.
- 이처럼 한 번 발생한 예산의 이월이 다음연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나)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센터의 경증자등 관리를 위한 의료진 및 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수당 등), 식비, 방역·소독비, 폐기물 처리비, 운영비 등 시설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의 보조사업으로, 2021년 예산현액(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총 488억 1750만원 중 141억 6612만원을 지출하고, 346억 4990만원을 명시이월함.
- 사업부서에서는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 우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9차 교부결정이 2021년 11월 25일 통보되었고 그 교부액이 358억 6000만원으로 나타나 연내 집행이나 감추경을 통한 예산운용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³²⁾.
 - 또한, 2021년 11월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등의 국보조사업 이월 신청(~12월 10일까지) 관련 협조 요청³³⁾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시이월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2)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7542(2021.11.25.),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지자체 지정)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9차).

33)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035(2021.11.2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이월 및 정산 관련 조치 사항 협조 요청.

4)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 불용액은 ① 회계연도중 재해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②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불용액은 총 110억 6천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 발생규모가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31건, 78억 5백만으로 나타남.

〈표-22〉 2021년도 시민건강국 1억원 이상 불용사업

(단위: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12,581,193	11,791,591	789,603	6.3%	감염병 특화를 위한 건축내외 마감재 설치 및 증축에 따른 각종 설비용량 증가등에 따라 시설비 증액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공사시 시설비가 감액되어 잔액발생
2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3,888,929	3,753,478	135,451	3.5%	자살예방센터 이전 예산 중 임차보증금액 차액과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임차료 면제로 불용액 발생
3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8,023,913	7,334,096	363,594	4.5%	인력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차액(인력 공백, 호봉차 등) 발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제사유
4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 설 운영보조	22,378,402	21,122,107	1,256,295	5.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비보조)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퇴사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 발생 (기타자본이전)정신건강 통합센터 건물 임대보증금 예산으로 시장조사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체결하여 잔액 남음 (민간위탁금)정신재활시 설 종사자 퇴사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 발생
5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203,000	962,400	240,600	20.0%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액 변동(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매칭시비 잔액
6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정신건 강복지센터 운영	11,117,176	11,007,631	109,545	1.0%	지역정신(찾동) 전담인력 채용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채용되어 집행잔액 발생: 목표 50명(자치구별 2명), 실적 39명 채용
7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지소 확충 지원	2,110,000	1,996,410	113,590	5.4%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인해 보건지소 축소운영으로 발생
8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100,000		100,000	100.0%	공공의료강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통합하여 용역 실시
9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4,475,000	2,477,996	474,398	10.6%	(기간제근로자등보수)헬 스케어매니저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 4개월 기준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사업일정상 실제 10.19일자로 채용됨에 따라 1.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 (기타보상금)낙찰차액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0	보건의료정책과	세이프약국 운영	738,790	607,800	130,990	17.7%	코로나19로 대면상담 건수가 현저히 감소
11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880,679	600,199	280,480	31.8%	중앙부처 반납고지서 발급 지연 등으로 미집행
12	감염병관리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2,000,000	1,797,706	198,406	9.9%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국 902,741, 시 902,741) 및 자치구 교부 후 집행잔액
13	감염병관리과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6,321,542	6,096,143	124,364	2.0%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축소 및 대면행사 미개최
14	코로나19대응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9,278,598	8,994,847	283,751	3.1%	협력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검체채취 의료인력 지원 받아 인건비 절약
15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조성	636,000	507,600	128,400	20.2%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참여할 신규 자치구 공모시 당초 목표 4개구에서 2개구만 참여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16	건강증진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705,000	2,931,500	773,500	20.9%	확정내시 변경(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매칭시비 잔액 발생
17	보건환경연구지원부	코로나19 진단검사 운영지원	1,926,867	1,724,855	202,012	10.5%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18	보건환경연구지원부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4,077,367	3,840,626	114,407	2.8%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19	보건환경연구지원부	기본경비	2,052,597	1,838,792	213,805	10.4%	코로나19 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20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서 비스 수준 관리	2,009,307	1,786,957	222,350	11.1%	코로나19로 인하여 신규 입원환자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타병원 진료 건수가 예상치보다 줄어들음
21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3,330,367	3,110,605	219,762	6.6%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의료진 품귀현상 발생하여, 채용 공백기간 발생
22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1,414,258	1,170,534	243,724	17.2%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비용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23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공공의료서 비스 수준관리	1,253,083	812,163	360,920	28.8%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비용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24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598,453	1,410,247	188,206	11.5%	○ 시설관리원 공석(2021. 6. 30. 字 면직)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집행액(23,345천원) 발생 ○ 공공의료사업팀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집행액(97,912천원) 발생 ○ 병동지원인력의 근무스케줄 변경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집행액(44,715천원) 발생
25	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1,239,140	1,047,899	191,241	15.4%	코로나19로 인한 내원객 감소로 수도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지출액 감소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26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결핵관리사 업(국비)	385,960	67,606	159,577	41.3%	(기간제근로자등보수)코 로나19로 인한 간호사 보수 상승으로 간호인력 채용 지원자가 없어 불용액 발생 (사무관리비)코로나19 로 인한 대내외 행사 축소 및 취소
27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공공의료서 비스 수준 관리	3,222,288	2,166,123	146,205	4.5%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 등
28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3,994,640	3,716,894	277,746	7.0%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수요 급증으로 의료기사 등 민간과건의료인력 미충원 발생
29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775,342	4,193,334	582,008	12.2%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수요 급증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미충원 발생
30	서북병원 원무과	국고보조금 반환	376,022	12,209	363,813	96.8%	결핵관리사업 등 보건복지부 정산고지서 발급지연으로 미납액 발생
31	서북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2,283,106	1,932,291	350,815	15.4%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비용 절감(요금인하)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불용발생 주요사례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사업명: 온서울 건강온)은 예산현액 44억 7500만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중 15억 2260만원을 사고이월³⁴⁾하여, 4억 7440만원이 불용됨.
- 사업부서는 ① 헬스케어매니저 인건비를 당초 4개월 기준 편성하였으나, 사업일정상 채용이 지연되어 1.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 발생, ② 낙찰 차액 등을 불용사유로 제출하였음.
 - 우선,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1년 서울시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신규사업이며, 당초 21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³⁵⁾하였으나, 짧은 사업 준비기간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³⁶⁾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업계획 재설계가 필요함을 지적³⁷⁾한 바 있음.
 - 이에, 동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변경(21년 11월 서비스 시작)³⁸⁾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준비가 지연되면서 헬스케어 매니저의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데,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신규사업

34) 이월사유: 서울형스마트 헬스케어 건강관리도구 구매 단가계약 체결(2021.10.29.) 이후 사업자 모집완료하였으나, 사업참여자 승인·배송·연동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납품기한 연장됨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35) 자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2021.05.31.),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한 전시민 건강관리계획(안).

36) 자료: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2021.06.21.) 회의록

- 김경영 위원: 예산안 제출일은 2021년 5월 25일인데 사업방침 수립일이 2021년 5월 30일이예요. 예산안을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업방침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보장협의 요청일은 2021년 6월 1일이예요. 그리고 이 답변이 와야지만 이게 시행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나는데 답변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가장 최소지요, 최대는 6개월까지도 가고요. 그런데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해도 답변 예상일자는 2021년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37) 자료: 2021.09.0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재설계 필요 지적”,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9500144&wlog_tag3=naver

3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2021.10.16.),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에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낙찰차액의 경우, 당초 스마트밴드 5만개 구매 관련 예산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2억 60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지며, 2억 4000만원의 차액³⁹⁾이 발생한 것인데, 물품계약의 체결(2021년 10월 29일)이 2021년 서울시 제2회 추경(8월) 편성 이후였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⁴⁰⁾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 추가로, 동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출시 5년 된 ‘구형 스마트밴드 보급’ 및 ‘데이터 유실·관리’ 부족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⁴¹⁾가 있었으며, ‘온서울 건강온’ 앱 이용자 ‘평가 및 리뷰’에서도 5점 만점에 2점대에 달하는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⁴²⁾,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니 주로 ‘스마트밴드’와 ‘앱’간 발생하는 연동오류, 자동 로그아웃, 동기화, 심한 렉 발생 등 기술적인 결함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반드시 ‘스마트 밴드가 필요한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9) 자료: 물품계약서(승인통보), 계약건명: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건강관리도구 구매 단가계약.

40) 자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시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경 예산 편성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낙찰차액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경시 사업 편성” 하도록 정하고 있고

41) 자료: 최아영, 2022.03.21., “5개월째 갈피 못 잡는 오세훈표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1000441>

42) 자료: 구글플레이(2022.06.06. 기준) : 온서울 건강온 앱 정보 5점 만점에 2.2점.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thejoin.healthnyou.seoul>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⁴³⁾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은 3개소(① 시립영보정신요양시설 ② 시립은혜로운집 ③ 서울정신요양원)이며, 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결산결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예산현액 48억 9633만원(민간위탁금) 중 2억 9825만원이 불용됨.
- 사업부서는 인력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차액(인력 공백, 호봉차 등) 발생을 불용사유로 제출하였음.
 - 우선, 해당 예산(국비 50%, 지방비 50%)에는 ‘21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기존종사자, 추가교대인력* 등)와 운영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음.
 -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추가교대인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18년 3월)⁴⁴⁾에 따라 추가 확보가 필요한 교대인력의 수를 의미하는데, ① 시립영보정신요양시설(기존 종사자 수 33명→추가 근무자 수 6명), ② 시립은혜로운집(기존 종사자 수 35명→추가 근무자 수 5명) ③ 서울정신요양원(기존 종사자 수 46명→추가 근무자 수 3명)에 추가로 필요한 교대 인력 총 14명의 인건비(6개월)는 지난 ‘20년 12월 31일 보조금 확정내

4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예비비)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4) 자료 : 고용노동부(2021.0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 주요내용: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근로, 특례업종 대폭 축소(26→5개),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등

시가 통보되었고⁴⁵⁾,

- '21년 5월 24일에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이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따른 주52시간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는 시행 시기(5~49인 시설: 2021년 7월 1일)에 맞게 교대인력 충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⁴⁶⁾.
-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의 교대인력 충원(14명)이 개정법 시행 시기('21년 7월)에 맞게 완료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데, 정신요양시설의 지리적 위치⁴⁷⁾에 따라 교대인력 채용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의 개정 시기('18년 3월)와 복지부의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일자('20년 12월) 등을 감안하면,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숙지하여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관련 재원이 불용되거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45)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192(2020.12.31.), 2021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확정내시 통보.

46)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105(2021.05.24.), 정신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주52시간제 준수 철저 요청.

47) ① 시립영보정신요양시설(소재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② 시립은혜로운집(소재지: 서울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③ 서울정신요양원(소재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258번길 122)

3 기금 결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음. 전년도말 조성액은 647억 83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80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8억 34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25억 2900만원임.

〈표-2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1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식품진흥기금	64,783	△2,254	2,580	4,834	62,529

- 2021년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수입은 ‘예탁금 회수(44.5%)’와 ‘예치금 회수(34.6%)’, ‘이자수입(7.5%)’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예치금(61%)’, ‘비용자성사업(30.3%)’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24〉 202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12,363	계	12,363
융자금회수	823	비용자성사업비	3,746
예탁금회수	5,500	융자성사업비	1,085
예치금회수	4,283	기본경비	3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이자수입	925	기타지출	-
기타수입	832	예치금	7,529
		예탁금	-

- 식품진흥기금은 각각 융자성사업 1개, 비융자성사업 20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21회계연도 기금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5〉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항목별 사용현황

(단위: 천원, %)

사 업 명		2021년도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률
융자성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2,000,000	1,085,400	54%
비융자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40,900	34,663	83%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4,200	554,190	10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000	185,468	95%
	음식문화 개선	102,000	95,849	94%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나트륨저감화 홍보활동)	344,000	343,385	100%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65,000	159,293	96%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105,000	93,942	90%
	어린이 전통발효식품 미각교육	45,000	45,000	100%
	한눈에 보는 우리동네 먹거리 지도 제작	30,000	18,633	63%
	먹거리전략 식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180,000	178,755	100%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93,900	69,706	74%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62,533	61,700	98%
	식품안전 전문교육	55,000	52,250	95%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793,300	782,747	99%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3,674	96%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85,800	78,370	91%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20,000	113,600	95%
	뉴노멀시대 먹거리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0,000	24,250	48%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480,000	480,000	100%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000	350,721	92%
기타	기금관리비	5,000	2,700	60%

- 또한 집행부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민간용자지원 사업에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음. 기존 민간 용자지원사업이 시설 개선자금, 육성자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법 및 고시가 제·개정 됨⁴⁸⁾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용자’를 시작하게 됨.
 - 해당 사업은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용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하게 되어 있음.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업소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용자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6〉 2021년 식품진흥기금 민간용자지원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 현황		용자 집행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시설개선자금	9	626,123	4	366,000
육성자금	2	200,000	-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133	2,596,000	36	719,400
합 계	144	3,422,123	40	1,085,400

48)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식품진흥기금 사업 위임행정규칙」 제2조(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용자

- 자치구를 통해 신청된 건들은 서울시의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며, 중복지원 등 제외대상과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률 대비 최종 용자실행은 약 28%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비용자성 사업의 경우 뉴노멀시대-먹거리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48.5%), 한눈에 보는 우리동네 먹거리 지도 제작(62.1%) 등의 사업이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뉴노멀시대-먹거리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사업의 경우 감염병 먹거리보장 매뉴얼 개발 용역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유찰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어 9월에 체결되었고, 용역 추진 중 과제가 추가되면서 개발용역비 선금을 제외한 사고이월액이 22년 4월에 지출예정이 되면서 21년도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눈에 보는 우리동네 먹거리 지도 제작’ 사업은 당초 디지털 시민시장 실 홈페이지를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제공정보의 양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식품안전정보 누리집으로 지도 서비스 매체를 변경하면서 디자인 및 전산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금의 비용자성 사업의 경우 2020 회계연도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사업의 경우 2020회계연도 집행률이 29.8%, 2021회계연도 집행률이 83.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⁴⁹⁾의 식품안전(위생) 지도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위생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교육, 협의회 개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49) 2021년 기준 총 268명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 중임.

-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무연수 미개최 및 운영 협의회 서면 대체운영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2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사업 집행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2020	40,900	12,171	29.8%
2021	40,900	34,663	83%

-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의 20년도 집행률을 감안하여 21년도 사업진행시 기존에 실시하던 직무교육 외에도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진행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20년도에 이미 사업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식품진흥기금 비용자성 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회의가 비대면 회의로 전환되거나, 실무연수가 취소되는 등 사업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집행률 저조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사업의 정상화와 평가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음.